

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·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협약서

제1조(목적) 김해고용복지⁺센터와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(이하 '새일센터'), 김해시일자리지원센터는 「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·협업체계 구축」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2조(사업기간) 「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·협업체계」 운영기간은 2023년 1월 6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단 연계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 운영기간은 연장된다.

제3조(사업규모) ① 김해여성새일센터 및 김해시동부여성새일센터로 연계하는 대상은 각각 연간 총 60명(IAP수립 60명), 김해시일자리지원센터로 연계하는 대상은 연간 총 30명(IAP수립 30명)으로 한다. 단, 참여자 추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하에 연간 사업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.

② 김해여성새일센터, 김해시동부여성새일센터 및 김해시일자리지원센터로 우선 연계하는 대상은 요건심사형·선발형(비경활) 참여자 중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으로 하되, 참여자 추이, 지역별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연계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4조(당사자의 의무) ① 김해고용복지⁺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·협업체계 구축·운영을 총괄하며, 김해여성새일센터, 김해시동부여성새일센터 및 김해시일자리지원센터가 연계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 사업 운영과 관련한 김해여성새일센터, 김해시동부여성새일센터 및 김해시일자리지원센터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김해여성새일센터, 김해시동부여성새일센터 및 김해시일자리지원센터는 연계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고, 진행상황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입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취업지원 내용) “김해여성새일센터, 김해시동부여성새일센터 및 김해시일자리지원센터”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, 참여자 특성에 따라 취업장애요인의 효과적인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취업에 필요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
2. 취업교육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
3. 참여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
4. 구인정보제공 및 동행면접 실시 등 취업알선서비스

제6조(사업담당자 지정 및 변경) 김해여성새일센터, 김해시동부여성새일센터 및 김해시일자리지원센터는 협약 체결일부터 5일 이내에 업무담당자*로서의 요건을 갖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음 서식에 따라 김해고용복지+센터에 통보하되,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담당자명	연락처	생년월일	관련 자격증	주요경력

* '업무담당자'는 상담, 직업심리검사, 집단상담, 훈련연계, 취업알선, 동행면접, 사후관리 등 취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

제7조(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) ① 김해여성새일센터, 김해시동부여성새일센터 및 김해시일자리지원센터는 센터 방문 구직자를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, 국민취업지원제도 로고를 홍보물 등에 적극 활용한다.

② 김해고용복지+센터는 김해여성새일센터, 김해시동부여성새일센터 및 김해시일자리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리플릿, 안내서 등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운용지침 등의 준수) ① 김해여성새일센터, 김해시동부여성새일센터 및 김해시일자리지원센터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,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, 「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(고용노동부 고시)」 「'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매뉴얼」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.

② 김해고용복지+센터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기간 중 사업운영과 관련한 추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김해여성새일센터, 김해시동부여성새일센터 및 김해시일자리지원센터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9조(모니터링) 김해고용복지+센터와 김해여성새일센터, 김해시동부여성새일센터 및 김해시일자리지원센터는 연계·협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상

호 협의하여 사업 운영과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.

제10조(보안) 김해여성새일센터, 김해시동부여성새일센터 및 김해시일자리지원센터는 김해고용복지+센터에서 연계된 참여자에 대한 개인식별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, 「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」,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

제12조(협의조정) 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 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복지+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정한다. 단, 고용복지+센터가 아닌 고용센터의 경우 협약 당사자 간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한다.

제13조(기타) 본 협약서는 기관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 년 1 월 6 일



김해동부여성새일센터
센터장 한수훈 (인)

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
김해고용복지+센터
소장 유진우 (인)



김해시일자리지원센터
기업혁신과
과장 이대형 (인)



김해여성새일센터
센터장 이은주 (인)